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7994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21.12.15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117호

★차장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협 조				

제554회 이사회 부의안

〈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〉

2021. 12.

부 의 안

제554회 이 사 회			
년 월 일	2021. 12. 29.	의 안 번 호	제 호
의 제	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		
구 분	의 결 사 항		

- 제 안 자 : 기획조정실장
- 주 문 :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.
- 제안사유 : 2021년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합의서 ('21.6.30.) 후속조치

3. 조무직렬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 내 실무직렬로 명칭변경 시행

- 의결사항 : 주문과 같음

○ 참고사항

1. 제안근거

- ➡ 2021년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합의서 ('21.6.30.)
- ➡ 정관 제24조(의결사항)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(기능)

2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합 의 : 부패영향평가 의견 없음

4.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공포·시행

5. 기 타 :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(신·구조문 대비표), 별첨

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(제안요지)

1. 개정이유

- 2021년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합의서 ('21.6.30.) 반영
 - 「조무직렬」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 내 「실무직렬」로 명칭변경 시행

2. 주요내용

- 일반직 직원에 관한 사항 중 「조무」 명칭 변경 (안 제10조)
 - 직군 명칭 변경 : (현행) 조무직 → (개정) 실무직

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

- 2021년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합의서 ('21.6.30.)
- 2021년도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합의 관련 공단 규정내 조무직렬 명칭 일괄 정비(요청) (인사노무처-10866, '21.11.1.)
- 정관 제24조(의결사항)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(기능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패영향평가 의견 없음

라. 절 차 : 이사회 의결 후 공포·시행

마. 기 타 :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(신·구조문 대비표), 별첨

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조무직”을 “실무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, 제4조의2제1항, 별표1-1 중 “조무”를 “실무”로 한다.

② 보수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나목,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“조무”를 “실무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직원) ① 직원은 일반적으로 하며, 일반직 직원의 직군은 사무직, 기술직, 조사직, <u>조무직</u>, 상수도직, 사회복지직, 시설관리직, 자전거관리직 으로 구분한다.</p>	<p>제10조(직원) ----- ----- ----- <u>실무직</u> ----- ----- -----.</p>